『2025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』 참여기업 모집공고 - 상반기

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한 「2025년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」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, 도내 중소·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2월
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

O 사 업 명 : 2025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

○ 사업기간 : 2025. 1월 ~ 2026. 1월

O 지원대상 : 충북 소재(본점 또는 공장소재) 중소·중견기업 50개사 내외

○ 지원내용 : 해외전시회 부스임차비 일부(80%)

O 지원방법 : 상반기(1월 ~ 6월) / 하반기(7월 ~ 12월) 사업공고 규정에 따른 지원

※ 먼저 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기업에 참가 후 증빙자료 요청

※ 직접 불참가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 또는 내용 불충분시 선정 취소, 부스비 지급 불가

% 시업예산 소진 시 조기 미감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이 많을 시 예산 책정 후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음

O 참여기업 : 충북 소재 중소·중견기업

O 지원범위

- 적용범위 : 2025. 1월 ~ 6월 개최되는 해외전시회

- 지원범위 : 부스임차비(80%) 연간 1,000만원 이내

O 지원내용

지원항목			지원내용	지원한도
해 외	오프라인	조립부스 (기본장치포함)	행사 부스 임차료(기본부스)	실비 80%
			전시회 참가비	
		독립부스 (바닥면적만 임차)	부스임차비 + 기본장치비	(1000만원限)

※ 추가장치비(모니터임차, 정수기임차 등) 지원하지 않음

- 접수기간 : 상반기 모집 2025. 2. 20.(목) ~ 3. 13.(목)
- O 신청방법 :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(www.cbgms.chungbuk.go.kr) 온라인 참가 신청
- 지원방법 : 상반기(1월~6월) / 하반기(7월~12월) 구분하여 지원금 지급 (상반기) 2025. 1월~6월, 지원금 7월 지급 예정 (하반기) 2025. 7월~12월, 지원금 2026.1월 지급 예정
- O 지원절차
 - (기업체) 참가이전 :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(사용계획서)
 - (진흥원) 상/하반기 신청기업 증빙서류 검토 및 승인
 - (기업체) 참가이후 : 참가 증빙서류 기업진흥원에 우편 제출(증빙서류)
 - (진흥원) 상/하반기 신청기업 참가 후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
- O 참가신청 접수 및 참여 승인
 - 사업공고 :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서 온라인 공고 및 사전신청 접수 ※ 전시회 참가이전 활용계획서만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
 - 증빙서류 접수 : 선정 후 개별연락, 증빙서류 우편 접수 ※ 전시회 참가이후 증빙서류 기업진흥원에서 우편 접수
 - O 지원대상 여부 판단기준
 - ① 신청기업 명의로 오프라인 해외전시회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만 인정
 - ② 장치비는 참가시 필요한 기본장치의 경우 인정
 - ③ 동일 전시회로 중앙정부, 지자체, KOTRA, 공공기관, 민간 협회 및 단체 등의 금전지원(일부 지원 포함)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
 - ④ 중앙정부, 지자체, KOTRA, 공공기관, 민간 협회 및 단체를 통한 개별 전시회 신청 및 참가 후, 필수자료인 참가신청서, 결과보고, 증빙자료 등 미제출시 지원 불가
 - ⑤ 신청기업 외 타 명의(해외지사, 대리점, 에이전트, 해외파트너 등)로 신청 및 지불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
 - ⑥ 대행기관(수행기관)을 통한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한 경우 전시주최-대행기 관 간 계약서, 전시주최 발행 인보이스,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, 전자(세금)계산서, 참여기업 송금증 등 납입 증빙서 미제출시 지원 불가
 - ⑦ 당초 신청한 해외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
 - ⑧ 판촉전, 미술전, 패션쇼, 세미나, 포럼 등 **주목적이 전시회 참가가 아닌**(부스 임차가 없는) **경우 지원 불가**

O 제출 증빙 서류

전시회 참가전	① [필수] 참가신청서(홈페이지 내 작성) ② [필수] 신청사업 사용계획서(각서 포함) ③ [필수] 사업자등록증 / 공장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) ④ [필수]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 [필수]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[필수] 중소기업확인서 / 중견기업확인서
전시회 참가후 (추후요청)	① 전시회 부스임차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(해외전시회 신청서 (application), 부스비(참가비) 인보이스) ② 송금증 등 납입증명(참가등록비, 부스임차료, 부스설치비, 추가장치비 인보이스, 은행 발행 외국환 거래 계산서, 송금증(원화 환율기재, 카드매출전표)) ※ 송금 적용 활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송금당일 하나은행외환포털 내 '최초' 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캡처본 추가 제출 ③ 수출상담카드 ⇨ 충청북도 서식 사용하고, 반드시 사본 제출※ 전시회 참가성과 및 바이어 명함 등이 수출상담카드에 있어야 함 전시부스 컬러사진 3매※ 참가증빙사진에는 업체명이 나오는 배너와 바이어와의 상담모습이 있어야 하며, 부스 전면에 업체명이 아닌 브랜드명이 포함된 경우, 해당 업체의 브랜드임을 증명하는 증빙 추가 제출) ⑤ 지원금 수취용 통장사본(대표자/법인 명의) ⑥ 출장자 전시회 출입증(Badge) 사본 ⑦ 수행기관 통한 참가등록 시 추가 증빙(전시주최-수행기관 간계약서, 전시주최 발행 인보이스, 수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, 전자(세금)계산서, 수행기관→전시주최측 송금증, 참여기업→수행기관측 송금증 등 납입증빙)

O 신청제외대상
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여 채무불이 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 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 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가능
-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
-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(본사·지점·공장)로 신청 및 선정 불가
-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
-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
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업종분류	품목코드	지원제외 업종
고 C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제조업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	46102中	담배 중개업
도매 및 소매업	46331 4633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22中	주류, 담배 소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 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 급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○ 문의처 :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지원팀 (T.043-230-9743)